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. 7. 5 선고 2017가단2050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7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1. 6. 27. 접수 제2761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김동원

별지